

2012. 7. 16 Vol. 29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국제곡물가 급등,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거시경제 동향

2012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국제곡물가 급등,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본 자료는 7월 11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국제곡물가 급등 체계적 대응 나선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국내수급 여건

- 최근 미국 중서부(옥수수, 대두)와 흑해 연안(밀)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지속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가격 급등**
 - 주요 곡물가격 추이(각 년도 7.1~7.11 평균, 달러/톤, CBOT)
 - ※ **밀** : ('08년) 306 → ('10년) 187 → ('12년) 293, '08년 대비 95.5% 수준
 - ※ **옥수수**: ('08년) 279 → ('10년) 145 → ('12년) 256, '08년 대비 91.9% 수준
 - ※ **대 두**: ('08년) 591 → ('10년) 364 → ('12년) 518, '08년 대비 87.8% 수준
- (국내수급 상황) 국제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미 금년분 물량을 대부분 확보**(밀·콩·옥수수 1,426만톤 중 1,281만톤)한 상태라, **올 하반기까지는 수급불안 없을 전망**
 - **콩과 옥수수**의 경우, **12월까지**, **밀**의 경우, **10월분까지** 최소 4~5개월분을 **확보**한 상태
- 다만, **국제곡물가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므로,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13년 초부터 국내 물가 상승 예상**

□ 대응방안

- (**국제곡물 관측시스템 가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곡물 관측보 발간**(7.25일 시범호). 농산물 수입, 가공, 유통 관련업체 및 수요자에게 관측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향후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변화가 국내의 관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가격 인상요인 사전 방지) 수입 콩의 정부 판매가를 고정 운용하고, 밀과 옥수수는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등 가격 인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
 - 콩의 경우, 수입콩의 정부 판매가(1,020원/kg)를 고정 운용하고, 옥수수의 경우, 사료원료에 현행 할당관세를 지속추진하며, 밀의 경우, 필요하면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
- (국내 생산기반 점진적 확대) 국내산 곡물의 생산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국제 곡물가의 변동에 대처
 - 밀의 경우, 우리밀의 생산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밀 자급률을 '15년에 10%까지 확대함으로써 밀의 수입 수요를 줄일 계획
 - 이를 위해 군 급식용에 사용하는 수입밀 제품을 우리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으로, 군인급식 확정시 우리밀 9천여톤의 추가 수요처 확보
 - 아울러, 농협 매장내 우리밀 사용 제빵코너(빵굽는 마을)를 현재 3개소에서 연말까지 전국 80개소 매장까지 확대
 - 국산밀산업협회와 함께 「범국민 우리밀 1kg먹기 운동」을 전개해 우리밀 소비활성화 분위기 조성
 - 우리밀을 주정용으로 '13년도 25천톤을 기본공급하고 추후여건을 고려해 추가공급하는 등 소비기반을 확충해 생산 및 자급률을 높여나갈 예정
 - '12년 국산콩 14만톤 생산을 목표로 논 소득다양화사업 등을 통해 재배 면적을 72천ha까지 확보
 - 「콩 재배단지 농가수량 300kg/10a 달성 프로젝트」를 통해 '12년도 10a당 생산량을 200kg까지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

※ 본 자료는 7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인가·감독권 등 권한의 위탁

- (법규정) (일반)협동조합 신고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은 재정부장관이 행사하되 각 부처의 장에게 위임 가능
- (시행령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합병 등 인가권과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감독권을 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위탁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법규정)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의 협의·조정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 (시행령안)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 관련사항 등을 심의

○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 (법규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
- (시행령안) 공정거래법 제60조를 준용하여 다른 조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정위 법령 해석으로 구체적 규율

○ 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

- (법규정) 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원칙 금지이나,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겸직 허용 가능
- (시행령안) 근로자·소규모협동조합은 직원의 임원 전원 겸직 허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3분의 1 겸직 허용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법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사업으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회비 등
- (시행령안) 소액 대출이자율 및 총액, 상호부조 총액 등을 규정, 세부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함.

□ 주요 법·제도 개선방안

- i) 다른 법인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ii)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iii) 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등 총 20개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법·제도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등 추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조직형태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추가
 - ※ 필요조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 개정(완료)
-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등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도 '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사업자에 포함
 - ※ 필요조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개정
-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추가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지출액의 8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함으로써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 ※ 필요조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개정
-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추가 검토
 -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추가방안 검토

※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하는' (일반)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에 해당

※ 필요조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제17조) 개정

- **농·어업회사법인 형태에 '협동조합' 등 추가**

※ 필요조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제17조) 개정

- **협동조합형 의료기관 설립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 건전한 의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 협동조합 설립요건을 현 생협법보다 강화하여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방지할 필요

※ 필요조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개정

- **산림사업법인 설립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등 추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도 산림사업법인 설립이 가능한 법인 형태에 포함

※ 필요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개정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제도 개선과제는 부록 참조.

부록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제도 개선과제>

개선 과제		소관부처
1. 다른 법인과 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1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고용부
1-2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등 포함	지경부
1-3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협동조합' 등 추가	국토부
1-4	가축분뇨 처리 사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 포함	환경부
1-5	농산물품질관리 대상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 등 추가	농식품부
1-6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추가 검토	중기청
1-7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재정부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재정부
2-2	학술연구용역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 '협동조합' 등 추가	재정부
2-3	농·어업회사법인 형태에 '협동조합' 등 추가	농식품부
2-4	산림사업법인 설립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추가	산림청
2-5	의사록 인증 예외법인에 협동조합 등 추가	법무부
2-6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고용부
2-7	협동조합형 의료기관 설립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공정위
3. 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3-1	과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재정부 행안부
3-2	업력 및 각종 인·허가 승계	전부처
3-3	기타 정책 지원 자격 또는 권리 유지	전부처
4.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활성화 과제 (예시)		
4-1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행안부
4-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중기청
4-3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복지부
4-4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가능성 검토	고용부

거시경제 동향

2012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7월 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2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4% 하락**(전년 동월대비 0.8% 상승)

- **농림수산물**: 채소류와 과일류 등이 내려 **전월대비 5.9% 하락**(전년 동월대비 0.2 상승)

- **공산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는 상승하였으나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이 내리면서 **전월대비 1.6% 하락**(전년 동월대비 0.3 상승)

※ 두바이유 평균가격(\$/bbl) : 2012.5월 107.32 → 6월 94.38(전월대비 12.1% 하락)

- **서비스**: 운수 및 금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전년 동월대비 0.8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3월	4월	5월	6월	'12.3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000	0.6	-0.1	-0.6	-1.4	2.8	2.4	1.9	0.8
농 립 수 산 품	43.6	1.4	-3.5	-1.6	-5.9	-3.1	0.2	5.3	0.2
곡	11.0	0.1	0.2	0.1	0.0	9.3	6.1	5.5	5.7
채	7.4	10.6	-6.0	-11.4	-12.3	3.7	27.3	37.3	26.4
과	5.3	2.1	-2.6	4.2	-9.9	-2.6	-4.9	24.0	9.6
축	12.0	1.4	-2.9	0.5	0.8	-16.7	-14.5	-15.8	-15.0
수 산 식 품	5.3	0.2	-0.2	-0.8	-2.6	-8.5	-11.3	-5.4	-7.9
공 산 품	644.8	0.7	0.2	-0.7	-1.6	3.1	2.5	1.6	0.3
석	59.7	2.6	0.8	-3.4	-4.9	10.6	8.1	5.1	2.4
화	55.2	1.6	0.6	-0.8	-5.4	2.8	1.7	0.2	-3.2
1 차 금 속 제 품	65.6	0.4	-0.4	-1.1	-2.7	0.2	-0.1	-1.6	-4.8
전	93.7	-0.3	0.7	0.5	0.5	-5.0	-2.9	-2.4	-1.5
력 · 수 도 · 가 스	44.5	0.4	-0.2	-0.7	0.1	10.8	10.1	7.7	7.8
서 비	264.4	0.2	0.2	-0.1	-0.2	1.3	1.0	0.8	0.8
운	61.6	0.3	0.8	0.4	-0.5	2.4	2.2	1.9	1.9
금	27.4	0.0	-1.2	-1.7	-0.7	-2.1	-5.1	-5.6	-5.5
부	42.3	0.0	0.1	0.0	0.1	1.1	1.1	1.1	1.1
전 문 서 비 스	43.3	0.2	0.1	-0.1	-0.2	2.9	2.9	2.7	2.6

□ 특수분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2.3% 하락(전년 동월대비 2.3% 상승)
-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10.1% 하락(전년 동월대비 7.9% 상승)
- 에너지는 전월대비 2.2% 하락(전년 동월대비 5.9% 상승)
- 신선식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1.1% 하락(전년 동월과 동일)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2.3월	4월	5월	6월	'12.3월	4월	5월	6월
식 료 품	81.3	1.7	-1.3	-1.0	-2.3	0.4	2.1	4.5	2.3
식 료 품 이 외	918.7	0.5	0.1	-0.5	-1.4	3.0	2.4	1.6	0.7
신 선 식 품	16.4	6.5	-3.9	-4.6	-10.1	-4.6	3.2	18.4	7.9
신 선 식 품 이 외	983.6	0.4	0.1	-0.5	-1.3	2.9	2.4	1.6	0.7
에 너 지	93.8	1.6	0.8	-1.7	-2.2	10.7	9.3	6.9	5.9
에 너 지 이 외	906.2	0.4	-0.2	-0.4	-1.3	1.7	1.4	1.2	0.1
I T	175.1	0.0	0.0	0.1	-0.1	-2.4	-1.8	-1.5	-1.2
I T 이 외	824.9	0.7	-0.1	-0.7	-1.6	3.5	2.9	2.3	1.1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3	-0.1	-0.3	-1.1	1.9	1.4	0.9	0.0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7월 9일~13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고추·마늘 생산기반 확충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급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고추와 마늘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률 확보를 위해 '13년에 국비 230억 8,0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 ▲ 건고추의 생산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13년에 국비 180억원(총 사업비 360억원)을 지원, 고추와 마늘 생산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비 25억원(총 사업비 50억원)을 보조,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에 국비 3억원(총 사업비 6억원)을 보조, 마늘 원예브랜드 육성에 국비 22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자료 : 농민신문(2012.7.9).

□ 따뜻해진 강원...사과농사 크게 늘었다



- 동북지방통계청의 '12년 재배면적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내 사과 재배면적은 434ha로 '11년 321ha에 비해 35.2% 증가**,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강원지역의 지리적·기후적 조건이 사과 재배에 적합해** 졌고, 단위면적당(10a) 농가소득도 복숭아·단감 등에 비해 높기 때문. 또한 최근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사과묘목을 무료로 나눠준 것 또한 요인으로 작용.

자료 : 농민신문(2012.7.9).

□ 칠레산 쇠고기 수입 허용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12년 7월 4일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함으로써 칠레는 미국·호주·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여섯번째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지위 획득. 특히 칠레산 쇠고기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쇠고기 관세 협의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는 대신 냉장 200t과 냉동 200t을 무관세 물량으로 설정함에 따라, 수입량 중 매년 400t이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될 수 있어 국내쇠고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

자료 : 농민신문(2012.7.11).

□ 안국, 세계 블루베리 각축장 되나

- 냉동·건조 제품으로만 수입되던 블루베리가 생과실로 수입. 미국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국내에 처음으로 이달 초 수입된 뒤 검역과정을 통과,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가 10일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고시하고 사실상 수입을 전면 허용,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수입위험평가가 진행 중에 있음...미국산은 한·미FTA 체결로 관세가 올해 40.5%를 시작으로 매년 4.5%씩 감소하고, 칠레산은 '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금년 관세가 8.3%이며, 2014년부터는 완전 철폐될 예정. 이에 따라 국내 블루베리 농가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됨.

자료 : 농민신문(2012.7.13).

□ 농촌주민 버스이용 편해진다

- 국토해양부는 농어촌과 도시 외곽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 운송사업(DRT)을 새로 도입할 계획. ▲ DRT는 지역 여건에 따라 '연계중심형'과 '노선탄력형' 두가지 방식으로 도입. '연계중심형'은 벽지나 비수익노선 등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주요

환승 거점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며, '노선탄력형'은 기존 노선은 유지 하되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노선에서 수요 발생 지점으로 이동해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방식. ▲ **이용요금은 버스 요금을 기본 수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예정**. DRT가 도입되면 지역 상황에 맞게 운행시간과 노선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예약도 가능(하루 전 예약→당일→실시간 예약으로 개선할 계획)해 농어촌 벽지 주민들이 드물게 다니는 버스 시간에 맞춰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농민신문(2012.7.11).

□ **소득높은 농업인 건보료 더낸다**

- 보건복지부는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함. ▲(원인) 정부가 획일적으로 농어민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다 보니,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율을 차등 적용키로 함.

자료 : 농민신문(2012.7.13).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7월 9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상반기 농식품 수출 37.2억불, 5.6% 증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상반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37.2억불로 전년 동기(35.3억불)대비 5.6% 증가
 - 부류별로는 신선농산물(17.2%)과 수산물(8.5%)의 증가폭이 컸으며 가공식품(1.5%)은 소폭 증가
- 금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5.6%)은 '11년/10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 크게 둔화
 - 이는 ① 일본 대지진에 따른 특수효과 약화, ② EU 재정위기에 따른 전세계 경제불황으로 주요 시장의 소비가 위축된 것에 기인

□ 부류별

- (신선농산물) 인삼을 제외한 채소류(49.1%), 과일류(19.5%), 버섯류(21.6%) 등 전 품목이 고루 증가
 - 파프리카(49%): 주 수출국인 일본 수요 증가로 수출가격 상승
 - 딸기(52.7%): 고품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홍콩 해상운송 확대로 운임 부담 감소
 - 토마토(65.7%): 공동선별 확대를 통한 품질균일화로 일본 외식업체에 식자재 공급 증가
 - 멜론(33.1%): 주 수출시장 일본의 생산지연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한국산 멜론 수요 증가

○ (가공식품) 1억불 이상 대형 수출 품목 중 궤련 · 커피조제품 · 음료 · 라면 등은 증가했으나 설탕은 감소

- 궤련(4.4%): 연초 주 수출지역인 중동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베트남, 대만 등 신규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체 수출 소폭 증가
- 커피조제품(6.5%): 중국 커피시장 성장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라면(12.3%): 중국 · 동남아 · EU 지역에서의 한류 영향,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개발로 소비층이 현지인으로 확산
- 막걸리(△17.7%): 미국 · 중국 · 호주 등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하며 시장다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수출 감소

□ 국가별

○ ASEAN · EU · 미국 등이 증가하였고 러시아 · 홍콩 등은 감소

- ASEAN: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558.4백만 불)
※ 주요 품목: 참치(103.6, 52%), 궤련(47.4, 120%), 커피조제품(35.3, 18%)
- EU: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211.2백만 불)
※ 주요 품목: 참치(27.3, 47%), 라면(6.3, 11%), 음료(4.7, 12%)
- 미국: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314.9백만 불)
※ 주요 품목: 음료(25.3, 48%), 김(23.7, 24%), 오징어(13.5, 39%)
- 일본: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1,155.3백만 불)
※ 주요 품목: 참치(107.0, 35%), 파프리카(51.2, 49%), 소주(49.4, 23%)
- 러시아: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121.7백만 불)
※ 주요 품목: 마요네즈(11.6, △2%), 궤련(2.8, △84%)
- 홍콩: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134.8백만 불)
※ 주요 품목: 설탕(38.0, △14%), 인삼(18.2, △1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